

##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보고 -

#### 제안이유

-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보강 등 기구·정원이 승인
- 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정원의 증원(안 제2조)
  -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 12명(694명 →706명)
    - ┌ 현행 : 694명(집행기관의 정원 : 67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 └ 개정 : 706명(집행기관의 정원 : 69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 참고사항

- 비용 추계서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승인  
[자치행정과-4752(2005. 5. 16)]
- 휴양림조성사업 기구정원승인[자치행정과-6519(2005. 7. 7)]

□ 검토의견

○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 도래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붕괴 등으로 사회복지 수혜자의 관리업무가 복잡해지고 증가 추세에 있는바,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 지난 2002년 산림피해에 따른 복구사업 및 휴양림 조림사업을 위해 설치하여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산림경영담당”이 2005. 5. 31자로 폐지됨에 따라 미복구된 산림피해 지역에 대한 마무리 복구와 휴양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력 보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13.6%로 도내 16시·군중 다섯 번째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정원증원에 따른 연간 소요비용 3억4천만원의 재원확보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우기 현 정원을 금회에 12명 증원시 706명으로 표준정원(623명)과 보정정원(654명) 대비 각각 83명과 52명 초과로 인한 연간 지방교부세 10억여원 이상의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력보강시에는 반드시 재원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47호
----------	-------

제출년월일 : 2005. 10. 10

제 출 자 : 예 산 군 수

### 제정이유

-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보강 등 기구·정원이 승인
- 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정원의 증원(안 제2조)
  -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 12명(694명 → 706명)
    - ┌ 현행 : 694명(집행기관의 정원 : 67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 └ 개정 : 706명(집행기관의 정원 : 69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 참고자료

- 비용 추계서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 인력 승인  
[자치행정과-4752(2005. 5. 16)]
- 휴양림조성사업 기구정원 승인[자치행정과-6519(2005. 7. 7)]

예산군 조례 제247호

##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79명”을 “691명”으로 하며, “694명”을 “706명”으로 한다.

별지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679명</u>	1. ----- : <u>691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2. -----		
	총            계 : <u>694명</u>	----- : <u>706명</u>		

## 【별표 1】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계	706	285	15	121	59	226	
정무직	1	1					
일반직	계	537	237	7	63	29	201
	4급	3	2		1		
	5급	31	13	3	1	2	12
	6급	144	71	2	7	8	56
	7급	166	93	2	10	9	52
	8급	128	54		32	7	35
	9급	65	4		12	3	46
별정직	계	20	2		16	2	
	5급						
	6급	15			15		
	7급	5	2		1	2	
	8급						
지도직	계	34			34		
	지도관	4			4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114	45	8	8	28	25
	6급	3	1		1		1
	7급	10	5	1	1	1	2
	8급	19	12	2		3	2
	9급	36	13	2	1	11	9
	10급	46	14	3	5	13	11

##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 □ 현 행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4	275	15	120	59	225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524	226	7	62	29	200
	4급	3	2		1		
	5급	31	13	3	1	2	12
	6급	141	68	2	7	8	56
	7급	162	89	2	10	9	52
	8급	125	51		32	7	35
	9급	65	3		11	3	45
별정직	계	21	3		16	2	
	5급						
	6급	16	1		15		
	7급	4	2			2	
지도직	계	34			34		
	지도관	4			4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114	45	8	8	28	25
	6급	3	1		1		1
	7급	10	5	1	1	1	2
	8급	19	12	2		3	2
	9급	36	13	2	1	11	9
	10급	46	14	3	5	13	11

### □ 개정안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06	285	15	121	59	226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537	237	7	63	29	201
	4급	3	2		1		
	5급	31	13	3	1	2	12
	6급	144	71	2	7	8	56
	7급	166	93	2	10	9	52
	8급	128	54		32	7	35
	9급	65	4		12	3	46
별정직	계	20	2		16	2	
	5급						
	6급	15			15		
	7급	5	2		1	2	
지도직	계	34			34		
	지도관	4			4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114	45	8	8	28	25
	6급	3	1		1		1
	7급	10	5	1	1	1	2
	8급	19	12	2		3	2
	9급	36	13	2	1	11	9
	10급	46	14	3	5	13	11

##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복지기획담당 신설
- 휴양림 담당 신설
- 정원 12명 증원(6급 2, 7급 4, 8급 3, 9급 3)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총 계	341,468	
○ 인건비	305,678	
- 기본급	181,459	- 봉급 : 12,889,900원×12월=154,678,800 · 6급 : 1,351,200원×2명=2,702,400 · 7급 : 1,212,400원×4명=4,849,600 · 8급 : 1,086,500원×3명=3,259,500 · 9급 : 692,800원×3명=2,078,400
- 수 당	25,920	- 상여금 : 154,678,800×1/6=25,779,800 - 가족수당외 2종 : 180,000×12명×12월=25,920,000
- 정액급식비	18,720	- 130,000원×12명×12월=18,720,000
- 교통보조비	17,280	- 120,000원×12명×12월=17,280,000
- 명절휴가비	19,334	- 154,678,800원×1.5/12=19,334,850
- 가계지원비	32,224	- 154,678,800원×2.5/12=32,224,750
- 연가보상비	10,741	- 154,678,800원×20/288=10,741,580
○ 물건비	2,76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	- 200,000원×12명=2,400,0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0	- 30,000원×12명=360,000
○ 이전경비	33,030	
- 성과상여금	9,441	- 1,258,870원×12명×62.5%=9,441,520
- 연금부담금	15,424	- 181,459,000원×8.5%=15,424,010
- 국민건강보험금	8,165	- 181,459,000원×4.5%=8,165,650